

번호 06-1

제 목	국문	보건의료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사례 분석			
	영문	A Case Study of Public Health Related Cases from Press Arbitration Committee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소윤, 손명세, 임병국 ¹⁾ , 박종연 ²⁾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언론중재위원회 ¹⁾ 연세대 보건대학원 ²⁾			
	영문	Sohyoon Kim, Mongsei Sohn, Byung-Kuk Im ¹⁾ , Chong Yon Park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Medical Collage of Yonsei University, Press Arbitration Committee ¹⁾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²⁾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환 경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언론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보건의료는 언론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이 다루는 이들 정보는 한정된 지면과 제한된 방송시간, 미디어의 상업주의 등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의 기능과 교육 및 여론 형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p> <p>이 연구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오보 사례를 언론중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건의료 관련 오보의 특성을 밝히며, 정정 및 반론보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오보로 인한 국민과 보건의료인 등의 피해를 줄이고 언론과 보건의료의 연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2. 연구 방법</p> <p>1981년부터 1997년 사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3,848건의 사례 중 보건의료관련사례 141사례를 선별하였고, 중복되는 사례를 제외한 72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보건의료관련 중재사례를 중재신청이유, 오보사례의 유형으로 분석하여 중재처리 결과와 반론보도(또는 정정보도)여부, 오보유형에 따른 사례의 일반적 특성과 중재신청 이유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사례의 일반적 특성에서 총 72건의 사례를 1981년부터 4년 단위로 나누어 본 결과 1981- 1984에 2건이었던 것이 1993-1996에는 49건(68.1%)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신청인별은, 보건의료인이 36건(50%)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기관이 15건(20.8%), 보건의료조직이 11건(15.3%)이었다. 피신청인은 신문사가 4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건(58.3%)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보다 많았다. 취재원은 공무원이 27건(37.5%), 일반인 23건(31.9%), 보건의료인·기관 22건(30.6%) 순이었다.</p>					

중재결과는 전체 72건 중 31건이 취하(43.1%), 22건이 합의(30.6%), 19건이 불성립(26.4%)이었다. 오보유형은 전체 72건의 신청사례 중 허위보도가 29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과장보도 17건(23.6%), 인용상 오류 15건(20.8%), 보도미흡 8건(11.1%), 부정확보도 3건(4.3%)의 순이었다.

전체 72건 중 39건(54.2%)이 정정보도를 하였다. 중재신청 이유별로 가장 높은 정정보도율을 보이는 것은 전문적 지식의 부족(18건 중 12건, 66.7%)과 정신적 피해(30건 중 20건, 66.7%)였고,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가장 낮은 정정보도율을 보였다(35건 중 18건, 51.4%). 정정보도 여부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신청인이 조직일 때보다 개인일 때, 서울 이외의 지역일 때보다 서울일 때, 그리고 신청이유의 수가 많을 때 정정보도의 확률이 더 높았다.

4. 고찰

보건의료사례의 중재신청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주로 중재신청인의 주장에 나와있는 말들을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보건의료 관련 언론중재 신청인이 언론인의 전문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보라고 주장한 사례는 72건 중 18건(25%)이었는데, 중재신청이유들 중 가장 적은 건수이다. 그러나, 이 중 12건(66.7%)에서 정정보도를 하여, 가장 높은 정정보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의료관련 기사들을 전문적인 부서가 아닌 사회부, 문화부, 과학부, 생활부 또는 유통부 등에서 담당한다(박두혁, 1998). 1995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7개월간 서울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앙 일간신문에 실린 1,514건의 보건의료관계 기사들을 분석한 한 연구는 일간신문들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건강관련기사나 병원정보에 관련된 기사보다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의학정보가 보건의료관련기사의 대부분(35.9%)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박두혁, 1997).

언론은 보건의료의 원천적 문제인 정보의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수단이다. 따라서 언론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상호 견제와 감시노력 뿐 아니라 조직적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좋은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보건의료관련 언론보도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오보가 발생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오보를 교정하려는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관련보도를 공정하고 진실되며 정확하게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인과 보건의료인들이 모두 더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인과 언론인 사이에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언론이 보건의료를 감시하며 교정하는 기능을 하듯이 보건의료인들도 지속적으로 언론의 보도내용을 검증하고 교정할 수 있어야 하겠다.